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90
------	-----

2023. 9. 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8월 10일, 유정희 의원(찬성자 14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9.11.)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 가결)

## II. 제안설명의 요지(김원중 의원)

### 1. 제안이유

- 미래유산은 최근 서울시 내 재개발 등으로 보존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의 미래유산 발굴과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50명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고, 서울의 미래유산 선정 취소 근거를 구체화하여 서울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 수립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4호).
- 나. 위원회 구성을 30명 이내로 규정한(안 제8조제1항).
- 다. 미래유산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라. 미래유산의 취소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 미래유산이 재개발 등으로 보존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의 미래유산 발굴과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미래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미래유산 보존·관리 연구와 교육을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임.

### 나. 미래유산 현황

- 서울시가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미래유산은 서울시민의 기억과 감성을 담은 공간이나 특색 있는 건물, 주요 인물과 사건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장소 등으로 현재 총 502개가 선정되어 있는 상황임.

### < 서울 미래유산 목록 현황 >

연번	구분	개수
1	시민생활사	152개
2	도서관리	106개
3	정치역사	48개
4	산업노동	69개
5	문화예술	127개
합계		502개

- 또한, 미래유산 문화재로 미처 지정되지 못한 근·현대 문화유산의 실질적인 보존을 도모하고 지정된 미래유산의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발굴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확대하는 것임.
- 시민이 주도적으로 미래유산을 발굴하고,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보존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있음.
- 그러나,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선정된 569개의 미래유산 중 11.8%인 67개가 다양한 사유로 취소되어 조레가 목표로 하는 미래유산의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 서울 미래유산 취소 현황 >

취소사유	취소개수/취소 비율
멸실/폐업	35개(52.2%)
취소요청	17개(25.4%)
문화재지정	13개(19.4%)
기타	2개(3.0%)
합계	67개

-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인해 점차 보존이 어려워지는 미래유산을 보전하기 위해 제도적인 보완을 하는 것은 향후 서울시가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에 부합하고 있음.

##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1) 미래유산의 연구 등을 기본계획에 포함(안 제5조제1항제4호, 안 제 15조)

- 개정안은 시장이 미래유산 보존·관리나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래유산의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한 것임.
- 이는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기본계획의 정책과 방향 수립을 더욱 공고히 하고, 세부 추진 전략과의 연계성뿐 아니라 실행력을 더욱 내실화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 또한, 개정안은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시행 하는 것을 명문화하고, 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규정을 신설 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제15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① 시장 은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 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 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p>

- 서울시는 매년 전문기관을 통해 미래유산 발굴조사와 보존·활용·관리 방안 등에 관한 연구와 아카이브 자료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는바, 개정안의 취지와 부합하고 있음.

- 다만, ‘2023 서울 미래유산 기본계획’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미래유산의 보존·활용방식은 기존 문화재 보존·활용 방식과 크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문헌조사, 인터뷰, 도면작성, 사진 촬영 등 획일적인 문화유산 보존·활용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래유산의 심의·선정을 위한 기초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어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확대·재생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임.
- 따라서 십여 년 동안 수행한 기초적인 조사·기록을 바탕으로 관련 유산을 새로이 발굴하여 미래유산의 가치 범위를 확대하고, 미래유산의 보존·활용 방식을 다각화함으로써 질적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임.

## (2) 위원회의 구성인원 축소(안 제8조)

-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구성인원을 기존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고 있음.
- 기존 위원회는 총 50명의 위원이 2년 임기 동안 문화예술, 산업노동, 정치역사, 도시관리, 시민생활 등 분야별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통해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하고 있음.
- 그러나, 미래유산보존위원회는 미래유산의 선정·취소·변경에 관해 단순 심의만 할 뿐 그 외 전문성을 제고하거나 정책추진을 도모하지

못하는 등 다소 소극적인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판단됨(붙임1).

- 더군다나 위원회는 50명의 많은 인원으로 인해 전체 회의 개최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 인원을 기존 50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변경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장기적으로 미래유산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만큼 자발적 보존·관리라는 원칙에 부합하도록 시민이 주도하는 시민참여형 문화유산으로서 지속될 수 있도록 위원 중 시민대표의 비중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3)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안 제16조)

- 개정안은 미래유산으로 선정된 이후 멸실·훼손 등으로 미래유산의 활용 가치가 소멸하거나,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서울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1. 2. (생략)</p> <p>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p> <p>&lt;신설&gt;</p> <p>4. (생략)</p>	<p>제16조(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소멸한 경우</p> <p>4.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 서울 미래유산은 보존·관리를 위해 2018년부터 영세한 미래유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리와 환경개선비를 지원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평균적으로 5건의 취소 건수가 발생하고 있음.
- 이는 보조금 지급이나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문화재와 달리 소유자에게 미래유산의 멸실이나 훼손 방지에 대한 의무가 없는 제도적 한계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들로 인한 것임.
- 따라서 미래유산이 점차 다양화되고 세분화되는 만큼 취소사유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미래유산의 기능 유지와 보존·활용 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취소사유를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로 판단됨.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 V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V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최근 3년, 서울특별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 개최현황

연도	개최일	재적	참석	안건
2020	2020-09-22	10명	7명	도시관리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0-11-04	10명	6명	도시관리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0-09-23	9명	7명	시민생활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0-11-11	9명	7명	시민생활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0-10-06	9명	6명	정치역사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0-10-15	7명	6명	산업노동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1	2021-07-01	10명	5명	도시관리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1-09-03	10명	6명	도시관리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1-07-12	10명	6명	문화예술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1-11-12	10명	7명	문화예술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1-08-24	7명	4명	산업노동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1-08-30	9명	6명	정치역사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1-09-08	9명	5명	시민생활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2	2022-11-18	6명	4명	정치역사 분과위원장 선출 정치역사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2-12-02	6명	4명	산업노동 분과위원장 선출 산업노동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2-12-02	6명	4명	시민생활 분과위원장 선출 시민생활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2-12-07	6명	5명	문화예술 분과위원장 선출 문화예술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2022-12-07	6명	4명	도시관리 분과위원장 선출 도시관리분과 선정·취소·변경 심의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중 의원 발의)

의안 번호	990
----------	-----

발 의 년 월 일: 2023년 08월 10일

발 의 자: 김원중 의원(1명)

찬 성 자: 김동욱, 김영철, 김용일,  
김재진,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영한, 박춘선,  
박환희, 신동원, 신복자,  
유정희, 윤기섭, 윤영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임춘대, 최민규, 최진혁,  
홍국표 의원(28명)

## 1. 제안이유

- 미래유산은 최근 서울시 내 재개발 등으로 보존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의 미래유산 발굴과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또한,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성 인원을 50명에서 30명 이내로 축소하고, 서울의 미래유산 선정 취소 근거를 구체화하여 서울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을 강화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기본계획 수립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제1항제4호).
- 나. 위원회 구성을 30명 이내로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다. 미래유산에 대한 연구 및 조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라. 미래유산의 취소 기준을 구체화함(안 제16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첨부)

##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미래유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 중 “50명”을 “30명”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종전의 제15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신설한다.

3. 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소멸한 경우

4. 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u>&lt;신 설&gt;</u></p> <p>4. (생략)</p> <p>② (생략)</p>	<p>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미래유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5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③ (생략)</p> <p><u>&lt;신 설&gt;</u></p>	<p>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 ----- <u>30명</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u>제15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u></p> <p>① <u>시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② <u>시장은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u>제15조</u>(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시 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 된 서울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서울 미래유산 선정을 취 소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3. <u>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 멸한 경우</u></p> <p>&lt;신 설&gt;</p> <p>4. (생 략)</p> <p><u>제16조 ~ 제19조</u> (생 략)</p>	<p><u>제16조</u>(서울 미래유산의 취소) --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멸실 및 공공성 훼손 등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소멸한 경우</u></p> <p>4. <u>형태 변형 등 선정 당시와 비 교하여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u>제17조 ~ 제20조</u> (현행 제16조부 터 제19조까지와 같음)</p>